

2026년 제2회 제주에너지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2026년 제2회 제주에너지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6. 12.

제주에너지공사 사장

1.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구분	채용분야	채용인원	주요직무	근무지
기간제 근로자	체험형 청년인턴 (장애인)	2명	- 행정업무보조	본사 등

2. 응시자격

가. 공통 응시자격 ※ 응시자격은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적격여부 확인함

- 성 별: 제한없음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 및 「제주에너지공사 정원의 기간제근로자 운영 내부규칙」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>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.
- 삭제 <2019. 12. 3.>
 - 미성년자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삭제 <2015. 12. 15.>

<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「제주에너지공사 정원의 기간제근로자 운영 내부규칙」 제13조(결격사유)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「인사규정」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7의2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7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7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 9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청년인턴: 18세 미만 또는 35세 이상
3. 경력단절여성: 18세 미만
4. 정부의 고령화 대응 및 신중년일자리 창출 확대에 따른 고령자: 55세 미만

나. 추가 자격요건

구분	추가요건
체형형 청년인턴 (장애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래 요건(①~④)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의 조건(㉠~㉢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일까지 계속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㉢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자 </div> 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③ 공고 시작일 기준 청년(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)에 해당하는 자 ④ 우리 공사 청년인턴 수료 및 경험 사실이 없는 자

3. 제출서류

가. 입사지원서 등에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

나. 증빙자료 제출: 이메일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(PDF 파일로 제출)

구분	제출서류
체형형 청년인턴 (장애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필수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. ※ 소정 양식 기재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 ※ 소정 양식 기재 -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(장애인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) 1부. - 주민등록초본(주소지 변경내역, 병역사항 표기) 1부. ※ 등본 아님에 유의 - (해당자) 제주소재 고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1부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도내 고교 졸업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을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‘제주소재 고교 또는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’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• 가점 대상자(해당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대상자 증명서

※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기하지 않고 제출 원칙

※ 모든 자격은 공고일 기준 취득분에 한함

- 공고일: 시험을 공고하는 날을 의미(공고 마지막날이 아님에 유의)

※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

※ 입사지원서 등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면 최종 합격이 결정된 후 또는 임용된 후라도 취소되며, 향후 5년간 동일한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4. 가점기준

가점대상	가 점	가산 시점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	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	과락 결정 전 부여

가. 과락 점수는 만점의 60%를 의미하며, 서류전형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나.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등록하여야 하며,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함(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적용)

다. 모든 가산대상 자격은 공고일 취득분에 한함

5. 응시원서 접수(온라인 접수)

가. 접수기간: 2026. 6. 16.(화)~6. 22.(월) 18시까지

나. 접수방법: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(recuit@jejuenergy.or.kr)

-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**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전화(☎064-720-7433) 확인 요망**

- 발송 시 메일 제목은 **‘2026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 제출’** 로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.

다. 접수방법
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.

-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처: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부(☎064-720-7433)

6. 시험의 방법

가. 서류전형: 접수자 전원에게 대하여 공고상 응시자격 등에 적합 여부를 판단(**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**)

- 서류작성 불성실자는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함

<서류작성 불성실자 불합격 처리 >

- 자기소개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을 기재한 경우 또는 항목별 허용 글자 수의 70% 미만 기재한 경우

- **제출 서류의 미비(발행일 초과, 다른 서류 제출, 미제출, 오기 제출 등) 의 경우 서류전형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**

- 서류전형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**차순위 추가합격 없음**

나. 면접시험: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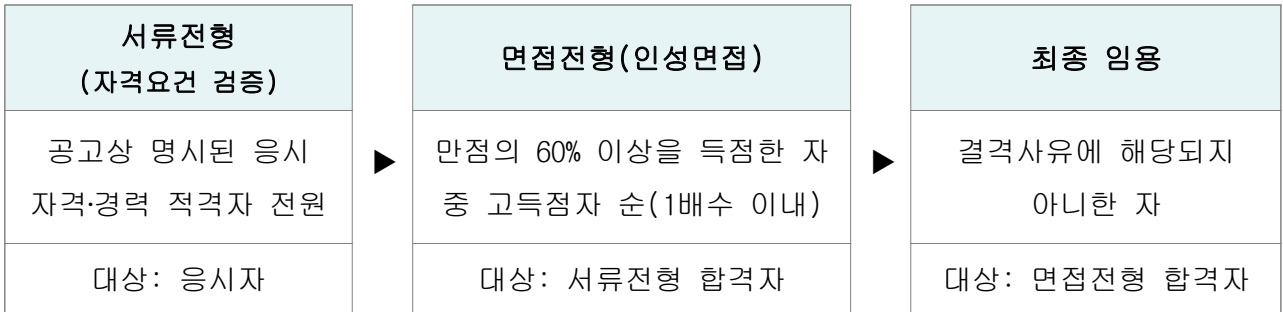
구 분	시험과목	합격 기준
체험형청년인턴 (장애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인성면접(100%, 1대多 또는 多대多) - 인품, 태도,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- 태도, 인성, 표현력, 의사소통능력, 가능성(각 20점) 	만점의 60%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※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, 나머지 절사

※ 면접전형 결과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결정함

- ① 취업지원대상자 → ② 인성면접의 각 지표별 고득점자 순(문제해결능력, 조직적합도, 직무적합도, 의사소통능력, 정보능력 순 / 지표별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함)

다. 전형절차 및 합격 기준



※ 전(前)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

※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, Zero Base에서 평가

※ 매 전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함

7. 근무조건

가. 임용예정일: 2026년 7월 중 예정

나. 근무기간

구 분	근무기간	근로시간
체험형 청년인턴(장애인)	임용일부터 6개월까지	주 40시간 (1일 8시간)

다. 보 수: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(2026년: 도 생활임금 고시 2,530,990원 기준 적용)

구 분	기타 복리후생
체험형 청년인턴(장애인)	4대보험 가입 등

8. 시험일정(예정)

구분	일정	비고
공고	`26. 6. 12.(금)~6. 22.(월)	
원서접수	`26. 6. 16.(화)~6. 22.(월) 18:00	recuit@jejuenergy.or.kr
서류전형	`26. 6. 26.(금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`26. 6. 29.(월)	
면접전형	`26. 7. 2.(목)	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`26. 7. 3.(금)	
임용등록	`26. 7. 6.(월)~7. 10.(금)	
결격사유 조회	~`26. 7. 15.(수)	
임용	`26. 7월 중	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 일정으로, 응시자 및 각 전형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매 전형 일정 공고 시 확정·게시함

9.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

- 이의신청 절차 안내
 - 접수기간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
 - 접수방법: '채용결과 이의 신청서' 를 작성·서명한 후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부로 제출
 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: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

10. 기타사항

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성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-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로 안내가 발송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기재 착오·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지역 거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허위 제출서류 위조 인사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예비 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와 가정사항을 적용한 결과 60점 이상 획득자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(분야별 3명 이내)하며, 예비 합격자는 미공개함
-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됩니다.
-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, 불합격자의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.

(단,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)
-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원서접수일·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 인사혁신부(064-720-743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입사지원, 이의신청, 이의신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은 지원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- ※ 제주에너지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【붙임】**
1.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각 1부.
 2.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.
 3. 채용결과 이의신청서 서식 1부. 끝.